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101712 판결 [연대보증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창희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

담당변호사 최윤희, 오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혜

변론 종결2024. 7. 18.

판결 선고2024. 10.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2021. 7. 29.자 우발채무 변제확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변제기 2022. 1. 31.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메리야스 제조 및 판매업, 정장 및 간이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2019. 3. 27.부터 2021. 4. 22.까지 및 2022. 1. 5.부터 2022. 1. 7.까지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E의 배우자로서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2021. 3. 22. 감사인인 F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다. 원고의 일부 주주들은 2021. 5. 31.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59호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라. E은 2021. 7. 29.경 원고에게 우발채무 변제확약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변제확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변제확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변제확약서

채권자 원고 귀중

1. 채무자는 본 각서 작성일 현재 채무자가 채권자에 발생시킨 아래 우발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하여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

1	(주)G 외2 (이하 괄호생략)	6,000,000,000	1,666,770,253
2	H	3,000,000,000	604,310,823
3	I	100,000,000	102,330,519

1	(주)G 외2 (이하 팔호생략)	6,000,000,000	1,666,770,253
4	J	800,000,000	800,000,000
합계	9,900,000,000	3,173,411,595	

2.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위 1항 기재 채무를 채무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을 2022년 1월 31.일까지 전액 변제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이를 재원으로 최우선 변제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며, 변제 기한까지 변제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담보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즉시 설정하고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데 동의한다.

2021년 7월 29.일

채무자

성 명 E (인)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성 명 B (인)

마. 원고는 2021. 7. 29.경 이 사건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변제약속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1차 회생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2021. 10. 2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2. 4. 12.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2. 5.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K이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아. 관리인 K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94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약속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2. 7. 11.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자. 이 사건 2차 회생사건에서 2022. 12. 29.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차. 피고는 'E이 이 사건 변제확약서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E을 고소하였고, E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284, 2023고합3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갑 제19, 2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변제확약서 제1항에 따라 2021. 12. 31.까지 우발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변제확약서 제2항에 따라 2022. 1. 31.까지 E의 미변제 금액을 대신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확약서 제2항에 따라 ① 우발채무 전액 중 일부청구로서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7. 29.자 이 사건 변제확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변제기 2022. 1. 31.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확약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변제확약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2) 사문서는 제출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357조), 이 사건 변제확약서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변제확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이하 '이 사건 인영'이라 한다), 이 사건 인영은 "L印"["○"은 상(床)과 비슷하게 생긴 판독이 곤란한 한자이다]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현출된 인영과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인영이 피고의 인장이나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가 E(자신이 이 사건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변제확약서 작성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위임장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변제확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원고의 법인차량이나 리조트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현재까지 E과 이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변제확약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E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E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제확약서 중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확약서는 피고의 연대보증 등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변제확약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용래

판사윤한나

판사신연석

1) 원고에 대한 법인등기부에는 위 E이 2022. 6. 1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22. 9. 29.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호증 제17면 참조), 원고의 2022. 1.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E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된 것으로 확인된다(갑 제10호증 제2면 참조).